

#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30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]

2. 변경내용

- (1) 비과세혜택 종료로 펀드명 및 투자대상자산, 취득한도 변경
- (2)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(HSBC펀드서비스 → 외환펀드서비스)

3. 대비표

- 집합투자계약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(중략) 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30 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	① (중략) <b>하나 UBS 파워 증권투자신탁(제 2 호)[채권]</b>
제 16 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, 특히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과 후순위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 및 어음에도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17 조 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2 조의 6 에 따라 투자신탁채산을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며,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3.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2 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(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인 것에 한한다) (이하 “후순위채권”이라 한다)	① 집합투자업자는 <b>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b>  <삭 제>
제 18 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① (중략) 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,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이 60%	① (중략) 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
	<p><u>이상이 되도록 운용한다.</u></p> <p>3.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2 개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+ 이하 C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및 후순위채권과 B+ 이하 C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어음(이하 “고수익고위험채권등”이라 한다)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이 10% 이상 40% 이하가 되도록 투자한다.</p>	<p>3. &lt;삭 제&gt;</p> <p>4. &lt;삭 제&gt;</p>
<p>제 20 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전단, 제 2 호, 제 3 호,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(중략)</p> <p>5.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전단, 제 2 호, 제 3 호,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제 18 조제 1 호 후단 및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(손실이 발생한 경우)로서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한다.</p> <p>③제 18 조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후 3 개월 및 만기일 전 3 개월은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7 호 내지 제 10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</p>	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전단,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(중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전단,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8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</p>
<p>부 칙</p>	<p>(신 설)</p>	<p>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3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비과세혜택 종료로 펀드명 및 투자 대상자산, 취득한도 변경</p>

- 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펀드명	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30 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	하나 UBS 파워 증권투자신탁(제 2 호)[채권]
제 2 부 8.	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2 호사목의	<삭 제>

<b>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	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(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인 것에 한한다) (이하 “후순위채권”이라 한다)	
	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, 투자신탁의 <u>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이 되도록 운용한다.</u> 4. 2 개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+ 이하 C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및 후순위채권과 B+ 이하 C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어음(이하 “고수익고위험채권등”이라 한다)에는 투자신탁의 <u>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이 10% 이상 40% 이하가 되도록 투자한다.</u>	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 4. <삭 제>
<b>제 2 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b>	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“고수익고위험채권투자신탁”으로서 신탁재산의 30% 수준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+ 이하 C 이상 채권 및 B+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	<삭 제>
<b>제 2 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b>	(3)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(2007 년 3 월 2 일 현재) 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지원 내용 - 투자원금 1 억원 이하: 소득세 5% 저율 분리과세 * 주민세 0.5%가 가산됨 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방법 - 통장 및 통장을 대신하는 카드 등 형태의 거래도 포함. - 투자자는 다수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, 1 개 판매회사를 통해 다수의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음  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(가입) 기한	<삭 제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9년 12월 31일까지</li> <li>* 가입일부터 3년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, 2009년 12월 31일에 가입(펀드 매입)한 경우 2012년 12월 30일까지 세제혜택 가능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지원이 가능한 1인당 저축한도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자: 투자원금 기준 1억원 이내</li> <li>- 비거주자(외국법인 포함): 한도 없음</li> <li>-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비거주자: 거주자증명서(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)</li> <li>2) 외국법인: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자료. 다만,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한민국국민등이 보유한 비율이 10%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과세 적용기간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</li> <li>- 다만,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하더라도 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(거주자 15.4%) 적용</li> <li>-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익금을 출금하는 경우, 분리과세 혜택 적용 배제 (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2조의 6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</li> </ul>	
--	---	--

경우 1년 이내 해지(환매)시에도 분리과세 적용)

-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일부 인출시 인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

-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

□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의 투자비용

-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(고수익고위험채권등)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4 항제 4 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BB, CCC, CC, C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및 B, C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어음

-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. 다만,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간주

-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함.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(일일보유비율)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함

- 투자신탁등 설정일부터 매 3개월 단위 평균보유비율은 다음과

	<p>같이 계산</p> <p>[기본산식]</p> <p>* 기준일이 법정공휴일(기준가 미산출일)인 경우에는 당해 공휴일 전일의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율을 계산함</p> <p>-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 개월 및 설정일 후 3 개월은고수익고위험채권등 투자비율 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</p> <p>-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 투자비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100 분의 10 으로 계산</p> <p>*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요건</p> <p>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신탁, 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</p> <p>2)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이고,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.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(일일보유비율)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함</p> <p>3)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</p> <p>※ 특히, 제 2 항 및 제 3 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.</p>	
<p>제 4 부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	<p>HSBC 펀드서비스</p>	<p>외환펀드서비스(주)</p>